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정책실에 평화·통일 관련 지역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도협력국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교육 전문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보화담당관실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업무를, 정책협력과에 통일센터 지역별 설치 및 운영 지원업무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판문점 견학 총괄 업무 및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각각 신설하고, 통일법제지원팀의 업무내용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7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조의3제9항제1호 중 “법령”을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

11. 법률자문 관리

제6조제10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통일센터 지역별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2조제4항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기관과 협조

23.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별표 1 중 총계 “265”를 “268”로 하고, 일반직 계 “261”을 “264”로 하며, 행정사무관 “72”를 “73”으로 하고, 행정주사 “28”을 “29”로 하며, 행정주

사보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5”를 “268”로 하고, 일반직 계 “261”을 “264”로 하며, 행정사무관 “68”을 “69”로 하고, 행정주사 “26”을 “27”로 하며, 행정주사보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7의5의 제목 중 “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를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로 한다.

제6조제10항제8호, 제7장의5 제목,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 제목 외의 부분, 제22조제10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7의5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 ⑥ (생략)	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 다.	⑦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u>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통일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 좌한다.	⑨ ----- ----- -----.
1. <u>법령</u> 의 제·개정 및 정비 사 항에 대한 총괄·조정	1. <u>법령 및 행정규칙</u> ----- -----
<u><신설></u>	<u>2.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심 사</u>
<u>2. ~ 9.</u> (생략)	<u>3. ~ 10.</u> (현행 제2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u><신설></u>	<u>11. 법률자문 관리</u>
제6조(통일정책실) ① ~ ⑨ (생 략)	제6조(통일정책실) ① ~ ⑨ (현행 과 같음)
⑩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⑩ -----

분장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12조(회담운영부) ① ~ ③ (생 략) ④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u>21.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 주선</u> <u><신 설></u> <u><신 설></u>	-----. 1. ~ 9. (현행과 같음) <u>10. 통일센터 지역별 설치 및 운영 지원</u> 제12조(회담운영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0. (현행과 같음) <u><삭 제></u> <u>22.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기관과 협조</u> <u>23.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65</u>		<u>268</u>	+3	
일반직	.	계	.		.		
	.		.		.		
			<u>261</u>		<u>264</u>	+3	
행정사무관	.		.		.		
	.		.		.		
			<u>72</u>		<u>73</u>	+1	
행정주사	.		.		.		
	.		.		.		
			<u>28</u>		<u>29</u>	+1	
행정주사보	.		.		.		
	.		.		.		
			<u>12</u>		<u>13</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65</u>		<u>268</u>	+3	
	.		.		.		
	.		.		.		
일반직 계			<u>261</u>		<u>264</u>	+3	
	.		.		.		
	.		.		.		
행정사무관			<u>68</u>		<u>69</u>	+1	
	.		.		.		
	.		.		.		
행정주사			<u>26</u>		<u>27</u>	+1	
	.		.		.		
	.		.		.		
행정주사보			<u>12</u>		<u>13</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5]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 10항 관 련)	(제22조 제10항 관련)	
•	•	•	
•	•	•	